

#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20호 2002. 5. 17)

총무위원회  
2002. 5. 27(월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5. 17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5. 17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5. 23 사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기획감사실장 조근도)

### 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인수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 조례 개정.
-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이상 “주민수의 비율”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가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“인원수”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수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인원을 150분의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대폭 완화 조정.(안제2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1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 : 없음